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9. 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14.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 8. 18.

다. 상정일자: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8. 2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김춘옥】

가. 제안이유

- 조례에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마포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마포구 옴부즈만 근거법령 명시(안 제1조, 제3조, 제5조)
- 마포구 옴부즈만 정의 추가(안 제2조)
- 마포구 옴부즈만 회피규정 의무화(안 제7조)

- 마포구 옴부즈만 당연퇴직 규정추가(안 제9조)
- 고충민원 신청인 대상자 확대(안 제12조)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2조~제38조
 - 입법예고: 2025. 7.10.~ 7.30 (제출된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전으로 조례에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마포구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① 주요 개정내용

- 목적 규정 정비(제1조)
 - 상위법 근거 조항(법 제32조~제38조) 명시.
 - 옴부즈만 제도의 목적을 “구민 권리·이익 보호 및 신뢰 확보”로 구체화.
- 정의 조항 보완(제2조)
 - “마포구” → “구”로 일괄 정비.
 - “구민” 정의 신설(서울특별시 마포구민으로 한정).
 - “옴부즈만” 개념을 법 제32조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위원으로 명확화.
- 위원 선출 및 자격 관련 규정 정비(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등)
 - 용어 정비: “공개모집 → 공개 모집”, “관련분야 → 관련 분야”, “시민사회단체 → 법 제2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등.

- 보궐 규정 명확화: “궐위된” → “공석이 생겼을”로 수정.
- 회피 규정 강화: “회피할 수 있다” → “회피하여야 한다”로 개정.
- 결격사유 조항 보완: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퇴직” 규정 신설.

○ 회의 운영 규정 신설(제6조)

- 옴부즈만 회의 개의·의결 요건을 명확히 규정(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 겸직·신분 관련 규정 정비(제8조~제10조)

- 용어 정비: “신분보장 → 신분 보장”, “겸직금지 → 겸직 금지”

○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절차 보완(제12조, 제15조, 제14조 등)

- 신청 자격 확대: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신청인 대표 요건 완화 → 신청인 단독 신청 가능.
- 자료제출 요구 주체 및 범위 명확화.

○ 기타 용어 정비

- “물품구매 → 물품 구매”, “매년 → 매”, “이내에 → 내에” 등 문구를 표준화.
- “마포구의 사무위탁기관 → 구의 사무위탁기관” 등 행정기관 명칭 통일.

○ 위임 규정 보완(제25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명확화.

②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

- 상위법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로 법적 안정성 강화.
- 옴부즈만 제도의 운용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구민 권익 보호 기능 강화.
- 용어와 절차의 일관성 제고로 행정 운영의 효율성 향상.
- 고충민원 신청 범위 확대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전반의 용어를 정비하며, 읍부즈만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충 민원 신청 범위 확대(외국인 포함), 회피 의무화,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퇴직 규정 신설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개정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읍부즈만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위원”으로 정의한 부분은 법령상 공식 명칭과 다소 차이가 있어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지침 수립 시 보완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제38조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